

더샵 안동더퍼스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54-843-049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6.04.09.(목)	'26.05.21.(목)	'26.05.26.(화)	'26.05.29.(금)	'26.06.02.(화)~ '26.06.04.(목)	'26.06.09.(화)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잔여세대 (무순위 / 임의공급 / 불법행위재공급)	○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점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5.21.(목)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116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4.09.(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6000093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5.26.(화)	`26.05.29.(금)	`26.06.02.(화) ~ `26.06.04.(목)	`26.06.09.(화)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74-1)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1069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최고 20층 7개동 총 493세대 중 잔여세대 70세대

■ 입주시기 : 2028년 10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116	01	084.9785A	84A	39	101	103, 203, 204, 303, 304, 604, 703, 704, 803, 904, 1103, 1504, 1604, 1703, 1803
					104	502
					106	206, 305, 405, 605, 705, 805, 1005, 1205, 1406, 1805
					107	205, 206, 305, 306, 405, 505, 605, 805, 905, 1006, 1205, 1505, 1606
	02	084.9702B	84B	23	101	102, 201, 301
					103	203, 303, 304, 403, 703, 1403
					104	104, 204, 303, 403, 603, 1003, 1303
					105	302, 303, 702
					106	204
					107	204, 304, 403
	03	084.9571C	84C	8	104	105, 205, 305, 405, 605, 1505
					105	204, 404
	합 계				70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별 라인별	층 구분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부가 가치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입주 지정일
									계약일	계약후 30일 이내	2026.10.26.	2027.02.25.	2027.06.25.	2027.11.08.	2028.02.25.	2028.06.26.	
84A	39	104동 2호	5~9층	1	56,418,602	422,181,398	-	478,600,000	5,000,000	18,93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167,510,000
		101동 3,4호 106동 5,6호 107동 5,6호	1층	1	51,954,503	388,745,497	-	440,700,000	5,000,000	17,035,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44,070,000	154,245,000
			2층	5	53,034,911	396,865,089	-	449,900,000	5,000,000	17,495,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44,990,000	157,465,000
			3~4층	7	54,162,808	405,237,192	-	459,400,000	5,000,000	17,97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45,940,000	160,790,000
			5~9층	12	55,290,704	413,709,296	-	469,000,000	5,000,000	18,45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46,900,000	164,150,000
			10~14층	6	56,418,602	422,181,398	-	478,600,000	5,000,000	18,93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47,860,000	167,510,000
			15층이상	7	57,546,499	430,653,501	-	488,200,000	5,000,000	19,41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48,820,000	170,870,000
84B	23	101동 1,2호	1층	2	54,164,382	382,235,618	-	436,400,000	5,000,000	16,82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152,740,000
		103동 3,4호	2층	5	55,289,421	390,210,579	-	445,500,000	5,000,000	17,275,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44,550,000	155,925,000
		104동 3,4호	3~4층	10	56,464,462	398,535,538	-	455,000,000	5,000,000	17,75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45,500,000	159,250,000
		105동 2,3호	5~9층	3	57,639,504	406,760,496	-	464,400,000	5,000,000	18,220,000	46,440,000	46,440,000	46,440,000	46,440,000	46,440,000	46,440,000	162,540,000
		106동 3,4호	10~14층	3	58,814,543	415,085,457	-	473,900,000	5,000,000	18,695,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47,390,000	165,865,000
		107동 3,4호															
84C	8	104동 5호 105동 4호	1층	1	50,411,368	387,788,632	-	438,200,000	5,000,000	16,91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43,820,000	153,370,000
			2층	2	51,454,123	395,845,877	-	447,300,000	5,000,000	17,365,000	44,730,000	44,730,000	44,730,000	44,730,000	44,730,000	44,730,000	156,555,000
			3~4층	3	52,543,220	404,256,780	-	456,800,000	5,000,000	17,84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45,680,000	159,880,000
			5~9층	1	53,643,906	412,656,094	-	466,300,000	5,000,000	18,315,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46,630,000	163,205,000
			15층이상	1	55,833,689	429,466,311	-	485,300,000	5,000,000	19,265,000	48,530,000	48,530,000	48,530,000	48,530,000	48,530,000	48,530,000	169,855,000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5.29.(금) ~ 2026.06.07.(일)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5.29.(금)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본인발급 / 발급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알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		주민등록표초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청약자와의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모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배우자와의 혼인사항 및 상세내용)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전부 표기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발급기간: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입증 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파견 및 출장명령서(직인 날인),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① ② 반드시 제출):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근로 및 파견 목적 제외),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기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 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청약자와 동일한 세대)을 구성하지 않은 미성년자녀 포함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 발급기간: 생년월일로부터 현재까지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 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신청 불가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발급기준 : 본인발급 / 발급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경우 발급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하나 대리인 위임 불가
	○		신분증	대리인	·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견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및 세대원	· 등기사항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해당 지자체로부터 당사의 「건축법」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는 확인서 또는 민원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 “제53조에 따른 주택임대증명하는 서류(주택공사가격 확인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자료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6. 06. 09.(화)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2026.05.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필수	추가 (해당자)	해당서류	발급 대상	확인 및 유의사항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아파트 공급대금 발코니 확장 계약금 무통장입금증 또는 모바일 /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등 ※ 현금수납 불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본인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확인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		정부수입인자(종이문서용)		·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1/2씩 연대하여 균등 부담 ※ 수입인자 구입처 및 납부금액 : 하단 참조
		○	추가 개별통지 서류	해당자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대리인 계약 시 (본인 이외)	○		인감증명서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발급용 / 대리인 발급용 불가) ※ 단 대리인 계약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 인장 대조 확인
	○		위임장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모바일 신분증 제외) ※ 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를 함께 구비하여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1차 계약금 [모계좌]	하나은행	406-910023-75204	코리아신탁(주)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가상계좌로 납입된 분양대금은 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가상계좌 사용기간 종료시, 해당 내용 고지 후 상기 모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 상기 지정계좌로 직접 무통장 입금[당첨 동·호수, 공급신청자(계약자) 성명으로 입금]하고 무통장입금증을 계약 시 지참하여 주십시오.
- ※ 계약금 입금 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분양대금은 약정된 납부 일정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공급계약 시 동호수별 가상계좌를 부여(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으로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상계좌로 납부한 분양대금은 상기 모계좌 [하나은행 406-910023-75204, 예금주 : 코리아신탁(주)]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사업주체는납부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로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 ※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으며, 매수인(수분양자)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분양대금 납입을 인정받지 못함에 있어 매도인(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대금 오납입에 따라 계약 미체결, 연체료 발생 등의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음을 계약자는 분명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각 1/2씩 부담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 + 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구분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일시 : **2026.06.10.(수)** 입장완료 후 예비순번 순서대로 동·호 배정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6.06.10.(수)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진행방식은 별도 고지 예정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6.10.26.	입주지정일
84A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84B	14,800,000	1,480,000	1,480,000	11,840,000
84C	15,000,000	1,500,000	1,500,000	12,000,000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시행 수탁자,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10.02.18. 개정 시행)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안방발코니및 다용도실 제외)
- 시공 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는 자재발주 문제로 인하여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발코니 외부에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등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 창호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의 형태, 위치, 규격, 사양, 색상, 열림(개폐)방향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양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 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위치,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 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 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통통, 선통통BOX 및 드레인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및 선통통이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수 없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상층세대 바닥 배관으로 인하여 천장 일부 구간에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를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의 민원 발생 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은 입주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
- 준공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허가(신고) 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진행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공사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분양계약자는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수납장의 길이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십시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미확장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공사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공사비 납부계좌	하나은행	406-910023-76904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입금 전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십시오.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후 입금증을 건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건본주택에서는 직접 수납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시예시: 201동1001호계약자→'2011001홍길동/201동201호계약자→'2010201홍길동'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점자와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한 것은 사업주체의 책임이 아닙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시행위탁사	시행수탁사(사업주체)	시공사
상호	유한회사 에이치에스개발	코리아신탁(주)	(주)포스코이앤씨
법인등록번호	191414-0000459	110111-2937831	174611-0002979
주소	경상북도 안동시 송하1길 124, 2층 201호(옥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대치동, 해성2빌딩 10층)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307(죽도동)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더샵안동더퍼스트.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건본주택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574-1

■ 분양 문의 : 054-843-0493